

서울 강남5, 서초3단지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2. 03. 17.]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 신청은 인터넷·모바일로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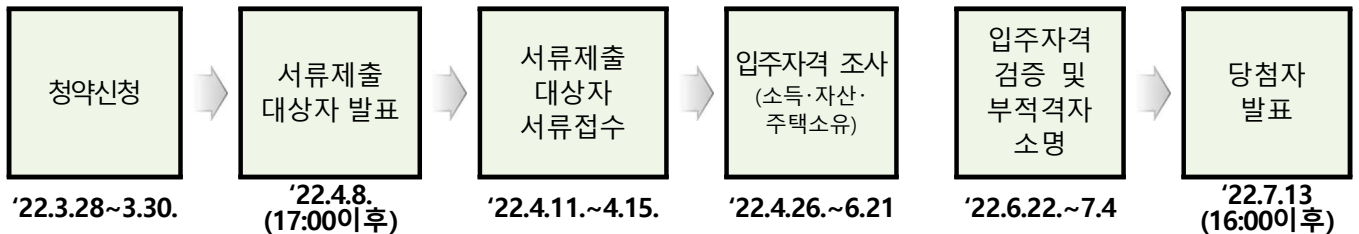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3.1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2,3순위자가 2,3순위 접수일인 29, 30일에 접수하지 않고 1순위 접수일인 28일 접수시 부적격 처리)
- **상기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접수는**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현장 접수는 받지 않으니,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강남5, 서초3 단지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2000132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장기전세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8.12.11.)」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소	
서울 강남5 서울 서초3	LH 서울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1600-1004
	인터넷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서울 강남5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LH 강남5단지 아파트)	5개동 1,339호	'15.08
서울 서초3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LH 서초3단지 아파트)	5개동 790호	'14.01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예시)

단지명	주택형 (모집단위)	세대당 계약면적(m ²)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밖의 공용	합계				
서울 강남5	23형	23.32	9.8551	14.7829	47.9580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51	21	15
	46형	46.91	19.8244	29.7372	96.4716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73	19	15
		46.79	19.7736	29.6611	96.2247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51형	51.99	21.9712	32.9575	106.9187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104	13	20
		51.96	21.9585	32.9385	106.8570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59형	59.93	25.3267	37.9909	123.2476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142	17	30	
서울 서초3	51형	51.32	26.6345	22.2611	100.2156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126	15	20
	59형	59.94	31.1081	26.0001	117.0482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124	3	50
		59.88	31.0770	25.9742	116.9312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 강남5단지 10년 공공임대(419호) 및 10년 분납임대(550호), 장기전세(370호), 서울 서초3단지는 국민임대(440호), 영구임대(100호), 장기전세(250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선정된 분은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자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순번 도래 시 별도 계약체결 통보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서울 강남5	23형	87,444,000	8,744,000	78,700,000
	46형	174,888,000	17,488,000	157,400,000
	51형	194,562,000	19,456,000	175,106,000
	59형	216,423,000	21,642,000	194,781,000
서울 서초3	51형	187,694,000	18,769,000	168,925,000
	59형	213,863,000	21,386,000	192,477,000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은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3. 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p>																		
세대구성원	<p>■ 세대구성원의 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외국인 배우자</td> <td>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p> <p>*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p> </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p>*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able> <p>■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p>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p> <p>*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p>	<p>*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p>	외국인 직계존·비속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p>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p> <p>*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p>	<p>*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p>																	
외국인 직계존·비속	<p>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p>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강남5단지 23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23형, 46형 우선공급 기준]	70% [51형, 59형 우선공급 기준]	100% [전 유형 일반공급 기준]
		1인가구(20%p ↑)	2,248,479원 이하	2,890,901원 이하	3,854,535원 이하
		2인가구(10%p ↑)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부동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50㎡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인 경우 **70%**, 2인가구인 경우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인 경우 **120%**, 2인가구인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50㎡이상~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인 경우 **90%**, 2인가구인 경우 **8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인 경우 **120%**, 2인가구인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공급일정

■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신청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기간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전용50㎡ 미만 강남5 [23형, 46형]	우선공급 소득50%이하 (1인 70%, 2인 60%)	1순위	'22.03.28(월) 10:00~17:00	인터넷 / 모바일	'22.04.08(금) 17:00 이후	'22.04.11(월) ~ '22.04.15(금) 등기우편 제출			
		2순위 3순위	'22.03.29(화) 10:00~17:00						
	일반공급 소득100%이하 (1인 120%, 2인 110%) [50%이하 청약미달시]	1순위 2순위 3순위	'22.03.30(수) 10:00~17:00						
전용50㎡ 이상 강남5 [51형, 59형] 서초3 [51형, 59형]	우선공급 소득70%이하 (1인 90%, 2인 80%)	1순위	'22.03.28(월) 10:00~17: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우편접수장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장기전세주택 예비자 담당"앞(우:06162) ※ '22.04.15.(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2순위 3순위	'22.03.29(화) 10:00~17:00						
	일반공급 소득100%이하 (1인 120%, 2인 110%) [70%이하 청약미달시]	1순위 2순위 3순위	'22.03.30(수) 10:00~17:00						

'22.07.13(수)
16:00이후
[예정]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결과는 입주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화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장기전세)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순위]

전용면적 50㎡미만	<p>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p> <p>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p> <p>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p> <p>※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p>
전용면적 50㎡이상	<p>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p> <p>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p> <p>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p> <p>※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1인가구 90%, 2인가구 80%)→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해당 자치구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p>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청약납입인정횟수 조회 결과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미만

-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자가 50%(1인 70%, 2인 60%)초과~100%(1인 120%, 2인 110%)이하 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1인 70%, 2인 60%) 초과~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 자로 간주하며,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50㎡이상~60㎡이하

- *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자가 70%(1인 90%, 2인 80%)초과~100%(1인 120%, 2인 110%)이하 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70%(1인 90%, 2인 80%)초과~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 자로 간주하며,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6.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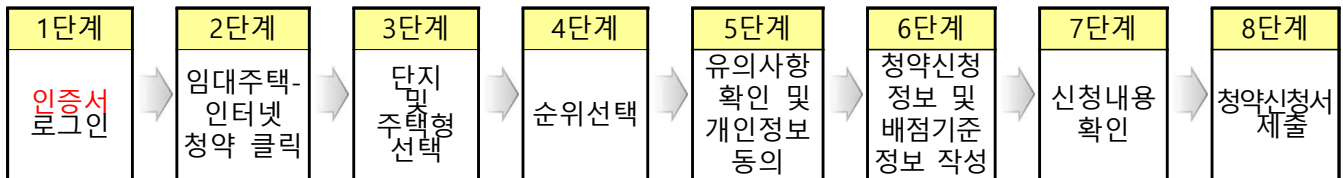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회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강남5, 서초3 단지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4.8(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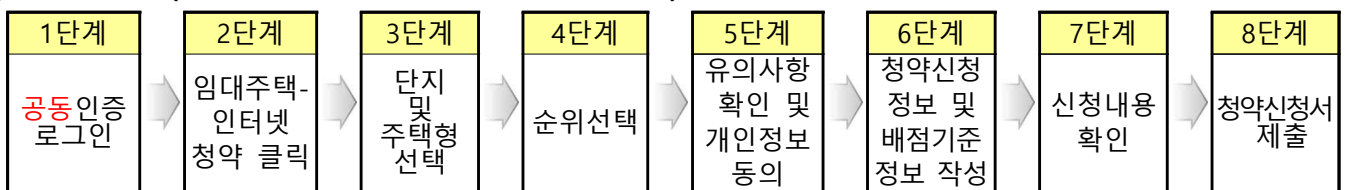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7. 입주자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인 경우 70%. 2인가구인 경우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인 경우 120%, 2인가구인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20%p ↑)	2,248,479원 이하	3,854,535원 이하
	2인가구(10%p ↑)	2,906,622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8,687,331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 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서울시 송파구,서초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인 경우 90%. 2인가구인 경우 8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인 경우 120%, 2인가구인 경우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20%p ↑)	2,890,901원 이하	3,854,535원 이하
	2인가구(10%p ↑)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별 담당자 참고하여 표 활용)

구 분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순	→ 배점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사람 순	→ 당해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

■ 배점기준표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공급신청자 나이 (만 나이 기준)	만 50세 이상	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만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 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시)거주기간 (만19세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⑤ 미성년자녀의 수(태아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⑧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7)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함.(무주택기간 상세설명 참고)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등으로 재등록된 경우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기간 산정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 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8.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03.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p>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p>행정복지 센터</p>	<p>1통</p>
<p>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세)</p>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p>행정복지 센터</p>	<p>1통</p>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p>(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세)</p>	<p><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p>행정복지 센터</p>	<p>1통</p>
<p>가족관계증명서 (상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p>행정복지 센터</p>	<p>1통</p>
<p>혼인관계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인정받고자 할 경우 	<p>행정복지 센터</p>	<p>1통</p>
<p>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p>	<p><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복지 센터 	<p>1통</p>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p>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할지사</p>	<p>1통</p>
<p>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p>	<p><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p>출입국 관리사무소</p>	<p>1통</p>
<p>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p>	<p><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p>출입국 관리사무소</p>	<p>1통</p>

■ 서류제출 방법(등기우편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약도



■ 주소안내(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삼성동 141번지)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장기전세주택 예비자 담당" 앞 (우:06162)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or ARS(1661-7700) → 3번(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LH청약센터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관할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p>임대대상 및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합니다. (갱신계약시)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합니다. <p>* 소득기준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85 927 1501 1193">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05%</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05%</td> <td>11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p>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이후 입주자격 심사 과정에서 계속거주, 단독세대주 제한, 부양가족 수 등 신청자격 또는 가점 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라 가점 조정 및 걸격될 수 있습니다.
<p>신청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p>당첨자결정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 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p>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p>지구 및 단지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강남5 501동, 502동, 503동, 505동 고층/ 서초3 301동 옥상층에 설치함. • 강남5단지의 경우, 지상주차가 불가능하며, 지하주차장(제한높이 2.3m)만 있는 단지로, 탑차 등 차체가 높은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한 단지이오니 의사결정 시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 03.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득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추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정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